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7
----------	-----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 성별구성기준, 위원장 직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가정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 제공의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위원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명시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규정 함(안 제1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 입법예고(2022. 4. 14. ~ 5. 4.) 결과 : 의견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 및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안 제7조~제12조)

- 개정안(안 제7조)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¹⁾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²⁾에 따라 위원이 성별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위촉하되,</u>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조례」라 함.)」제7조3)에 따라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의 해촉(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회의(안 제10조)에 대해 규정하였음.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신구표 비교>

현행	개정안	비고
회의(제8조)	위원의 임기 (안 제8조)	(신설)임기 2년, 연임 2회 가능
간사(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9조)	(신설)해촉사유 명확화
위원수당(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0조)	(신설)위원장의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장의 업무대행은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
-	회의 (안 제11조)	(변경)의사 및 의결정족수 내용 추가

- 또한 개정안(안 제12조)는 지난 2022년 8월 1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권익보호담당관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된 바, 이를 반영하여 간사를 현행 권익보호담당관에서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변경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9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u>권익보호담당관</u> 으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양성평등담당관</u> -----.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 제14조의3)

- 개정안(안 제14조의3)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

을 도모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u> <u>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u> <u>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u> <u>의 적절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u> <u>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u> <u>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u> <u>지원사업</u> <u>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u> <u>보조사업</u> <u>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u> <u>지원금 지원</u> <u>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u> <u>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u> <u>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u> <u>양육 및 가사지원사업</u> <u>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u> <u>교육 및 홍보사업</u> <u>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지원사업</u>

-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 처벌이 약화(불기소, 가정보호사건4)되어 처리될수록 112 신고율이 낮아지며, 상담소 상담을 통한 보호·지원을 원하는 피해자 증가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현황('16~'20년)>

<경찰의 가정폭력사범 조치 현황('16~'20년)>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2),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 또한 가해자 처벌이 약한 법체계에서 피해자 지원이 더욱 중요하나, 현 지원정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5)에서 규정한 사업들을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 4) 가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분(형사처벌 아님)
-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로 ‘보호·치유’에 치중하여 주거나 일자리 등 ‘자립’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 특히 2019년 연구결과⁶⁾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거주지 확보(69.4%), 다친 마음의 회복(67.9%), 고정적 급여(66.9%) 순으로 나타난 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개정안에 따른 사업내용>

안 14조의3		관련사업
제1항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총 1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총1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상담, 심리·정서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치료프로그램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6)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9),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개발 연구, p. 146.

안 14조의3		관련사업
		사업비 지원 ○ (신규)시설 미이용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제2항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 시설 퇴소 후 자립위한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지원 (시에서 임대보증금 지원, 입주자는 관리비 등 납부)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 공동생활가정 10호당 1명의 자립상담원 및 사업비 지원(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 (신규)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자체) - 매입임대주택 지속적 확대 지원 (1호당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 (신규)민간임대주택 임차료(월세)지원
제3항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국비100%) - 퇴소 시 匾심의를 거쳐 500만원 지원 ○ (신규)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현실화
제4항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대상 직업훈련 정보 제공 및 수강료 지원 ○ (신규)보호시설 미이용 피해자 및 퇴소자 대상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제5항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	○ (신규)아이돌봄사업 및 가사지원사업
제6항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 여성긴급전화1366 및 상담소에서 수행 ○ (신규)피해자 지원체계(상담소, 보호시설) 안내 및 신규사업(월세, 아이돌봄 등) 홍보
제7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동반자녀 양육비,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위원회조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 성별구성기준, 위원장 직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나. 위원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8조 및 제9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기타

(1) 입법예고 (2022. 4. 14. ~ 5. 4.)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p> <p>1. ~ 6. (생략)</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⑤ <u>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위촉하되,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u></p> <p><u>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p>

<신 설>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
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
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
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제8조(회의) (생략)

<신설>

제9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 제11조의2 (생략)

<신설>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양성평등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의2 (현행 제10조부터 제11조의2까지와 같음)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 지원금 지원

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사업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2조 ~ 제22조 (생략)

제15조 ~ 제2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간 임대주택 임차료(월세)지원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
- 가사도우미 파견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임기제7급 윤나래(2133-8698)